의 안 번 호

2031

#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·역사·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 **검 토 보 고 서**

#### 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. 11. 16.(금) 강혜순 의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1. 18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7.(목)

#### 2. 제안이유

○ 외솔 최현배선생의 고향인 병영지역의 외솔·역사·문화와 문화재를 계승, 발전, 활용하여 특성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·역사·문 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기본원칙,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연도별 시행계획, 평가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의견수렴(안 제7조)
- 마. 주민추진위원회, 구성, 기능(안 제8 ~ 제10조)
- 바. 지원(안 제11조)
- 사. 마을 교육, 체험 등(안 제12조)

- 아. 마을기록문화관 설치·운영, 정원마을 조성 등(안 제13조 ~ 제14조)
- 자. 빈집수리·운영(안 제15조)
- 차. 마을문화유산해설소 등(안 제16조)
- 카. 외솔학당 설치·운영, 남북 한글 문화교류(안 제17조 ~ 제18조)
- 타. 도시재생 활용(안 제19조)

## 4. 근거법규

○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12조, 제13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병영지역의 외솔·역 사·문화와 문화재를 계승, 발전, 활용하여 특성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외솔한글·역사·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중구를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# 근 거 법 규

###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- 제2조(주민조례청구권자)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"청구권자"라 한다)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(이하 "지방의회"라 한다)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(이하 "주민조례청구"라 한다)할 수 있다.
  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-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- 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 하여야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  - 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-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주 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 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 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  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